

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1.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

| 관 계 | 성 명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-□□ |

2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

※ 유의사항 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

| 세대주와의 관 계 | 동의자 성 명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 |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^{1),2)}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 |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⁾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-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
| 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-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
| 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-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
| 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-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□□□□□□□□ |

- 1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교육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특별시교육감·광역시교육감·특별자치시교육감·도교육감·특별자치도교육감(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, 이하 '보건복지부장관 등' 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 (만일 동의하지 않으면,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. 단,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「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」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.)

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뒷면 참조

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: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(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)까지,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

5. 정보제공 목적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기초연금법」, 「장애인연금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·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

금융기관장·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금융기관 등의 명칭

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
 -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-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금융정보 등의 범위

- 금융정보
 -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, 3개월 입금액 총액*
*기초생활보장제외한 해당
 -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
 -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
 -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 : 액면가액
 -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 -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- 신용정보
 -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-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- 보험정보
 - 보험증권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- 연금보험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유의사항

-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**동의를 제출을 2회 이상 거부·기피할 경우*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8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제4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제8항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4조,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24조제3항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이 동의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「기초연금법」 제10조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8조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1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2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9조에 따라 **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**
향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3조 및 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 제2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1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**동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**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의 금융정보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2조제6항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7항 및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3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3제6항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15조제6항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6, 「주거급여법」 제15조제6항에 따라 **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**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| 고 용 · 임 금 확 인 서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피 고 용 자 | 성 명 | | | 생년월일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
| | 고 용 성 격 (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) | | | | | |
| 고 용 기 간 | | 년 | 월 | 일부터 | 년 월 일까지 | |
| 근 로 시 간 | | 일시간 오전 | : | ~ | : | (시간) |
| | | 일시간 오후 | : | ~ | : | (시간) |
| | | 주 당 근로일수 : | | | 일 | |
| | | 주 근로시간 : | | | 총 | 시간 |
| 임 금 지 급 형 태 | | 일당제 | 1 일 임 금 : | | 원 | |
| | | | 월평균 고용일수 : | | 일 | |
| | | 월급제 | 기 본 금 | 월분 | 월분 | 월분 |
| | | | 각 종 수 당 | | | |
| | | | 기 타 금 액 (여비, 자동차유지비 등) | | | |
| | | | 합 계 금 액 | | | |
|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입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 가 입 | |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사 업 장 명 :</p> <p>사 업 장 주 소 :</p> <p>사업자등록번호 : 전화번호 :</p> <p>(영업허가번호)</p> <p>사 업 주 명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| | | | | | |
| <p>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000만원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</p> | | | | | | |

| | | | | | | |
|--|---|--|---|---|--|--|
| 가입연도 | |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| | | ※ 처리기간 - 희망저축Ⅰ 20일 - 희망저축Ⅱ / 청년내일저축 70일 | |
| 가입기수 | | 희망저축계좌Ⅰ / 희망저축계좌Ⅱ / 청년내일저축계좌 | | | | |
| 가입은행 | | | | | | |
| 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저축계좌Ⅰ (생계·의료 수급자)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사업 참여 시 사업단 유형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저축계좌Ⅱ (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) | | | ○ 시장진입형 ○ 시간제일자리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) | | | ○ 청년자립도전사업단 ○ 사회서비스형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내일저축계좌 (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) | | | ○ 사회서비스형(비수익형) ○ 인턴·도우미형 | | |
| 신청자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| 휴대전화 | | |
| | | | | 전화번호 | | |
| | 주소 | | | 전자우편 | | |
| | 비상연락 | 관계 | 성명 | 연락처 | | |
| | 직업 | 근무지명 | | 근무기간 | ~ | |
| 근무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직(정규직)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직(계약직, 기간제)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용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르바이트(시간제근로자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영업자 | | | | | | |
| ※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 (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) | | | | | | |
| 가입자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| 신청인과의 관계 | 전화번호 | |
| | | | | | 휴대전화 | |
| 적립 및 가구 정보 | 1. 월별 저축액 (약정금액) | | 최소 100,000 원 (*100,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) ※ 저축기간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대 36개월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대 60개월(균입대한 경우) | | | |
| | 2. 저축액 사용계획 | | | | | |
| | - 저축목적 |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구입·임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·운영자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자산형성(ISA·일반적금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연금·고용보험·건강보험 본인부담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가구원 돌봄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결혼자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에 자립·자활 | | | | |
| | - 향후 자립· 자활계획 | (자유롭게 기술) | | | | |
|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| | 미참여 / 참여(사업명 : , 기간 : , 수령액 :) | | | | |
| 희망·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 | | 최초 / 재가입(사업명 : , 참여기수 : , 적립횟수 :) | | | | |
|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div> 신청인 : (인) ※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| | | | | | |
|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| | | | | | |
| 1.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. 2.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 3.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,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.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| | | | | | |

저축 동의서

□ 동의

- 나는 희망저축 I·희망저축 II·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.
-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.
-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□ 조건

1. 공통

-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.
-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.
-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2. 사업별

※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희망저축계좌 I (생계·의료수급자동장)

□ 동의

| | |
|------------|---|
| - 지원금 적립기준 | 당월 본인적금 적립 +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 |
| - 중도해지사유 | 3년 만기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 못한 경우, 일부지급해지 후 재 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,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 미달,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압류·가압류,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|
| - 지급요건 | 3년 이내 <u>탈수급</u> (의료급여까지 벗어나는 경우) |

저축 동의서

※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희망저축계좌II(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) **동의**

| | |
|------------|--|
| - 지원금 적립기준 | 당월 본인적금 적립 |
| - 중도해지사유 |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,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, 압류·가압류,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,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, 용도증빙 못한 경우 |
| - 지급요건 | 3년 간 통장 유지 + <u>교육(총 10시간) 이수</u> + <u>사례관리 상담(총 6회) 이수</u> + <u>지원금의 50% 이상 용도증빙</u> |

※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(기존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) **동의**

| | |
|------------|---|
| - 지원금 적립기준 | 당월 본인적금 적립 |
| - 중도해지사유 |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,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, 압류·가압류,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, 본인 사망시 |
| - 지급요건 | 3년 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<u>교육(총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</u> |

계약

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 I·희망저축계좌 II·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·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**동 의 합 니 다.**

년 월 일

희망저축계좌 I·희망저축계좌 II·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(성명) (서명/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참고 4

〈『청년내일저축계좌』 자가진단표〉

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,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『청년내일저축계좌』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| | | | | | |
|-----|---|---|---|--------|------|
| 작성일 | 년 | 월 | 일 | 작성자 성명 | (서명) |
|-----|---|---|---|--------|------|

| 구 분 | 점 검 내 용 | 선택체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|--|---------|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필수 가입요건 | 1. 귀하는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합니까?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가구구분</th> <th colspan="4">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(원/월)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50% 이하</th> <th colspan="2">100% 이하</th> </tr> <tr> <th>소득인정액</th> <th>연령</th> <th>소득인정액</th> <th>연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인 가구</td> <td>972,406</td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만 15~39세</td> <td>1,944,812</td> <td rowspan="6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만 19세~34세</td> </tr> <tr> <td>2인 가구</td> <td>1,630,043</td> <td>3,260,085</td> </tr> <tr> <td>3인 가구</td> <td>2,097,351</td> <td>4,194,701</td> </tr> <tr> <td>4인 가구</td> <td>2,560,540</td> <td>5,121,080</td> </tr> <tr> <td>5인 가구</td> <td>3,012,258</td> <td>6,024,515</td> </tr> <tr> <td>6인 가구</td> <td>3,453,502</td> <td>6,907,00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'근로·사업소득'으로 판단합니다. 근로·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, 노인일자리/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.(단,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) | 가구구분 |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(원/월) | | | | 50% 이하 | | 100% 이하 | | 소득인정액 | 연령 | 소득인정액 | 연령 | 1인 가구 | 972,406 | 만 15~39세 | 1,944,812 | 만 19세~34세 | 2인 가구 | 1,630,043 | 3,260,085 | 3인 가구 | 2,097,351 | 4,194,701 | 4인 가구 | 2,560,540 | 5,121,080 | 5인 가구 | 3,012,258 | 6,024,515 | 6인 가구 | 3,453,502 | 6,907,004 | 예, 아니오 |
| | 가구구분 | |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(원/월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50% 이하 | | 100% 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소득인정액 | 연령 | 소득인정액 | 연령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1인 가구 | 972,406 | 만 15~39세 | 1,944,812 | 만 19세~34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인 가구 | 1,630,043 | 3,260,08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인 가구 | 2,097,351 | 4,194,70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인 가구 | 2,560,540 | 5,121,08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인 가구 | 3,012,258 | 6,024,51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인 가구 | 3,453,502 | 6,907,004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.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**** 을 하고 있습니까? *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·장애인일자리사업 등)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** '재직증명서', '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' 등을 통해 확인 *** (제외업종) 사치성·향락업체, 도박·사행업 업종 종사자 | 예, 아니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.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 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 | 예, 아니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.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10시간 을 이수하고 자금용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지급 이 가능합니다. 참여가 가능합니까? | 예, 아니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. 유사 자산형성사업 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? | 예, 아니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[담당 공무원 확인용]

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|
| 확인일 | 확인자 성명 | (서명) | 점검결과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|
|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|

참고 5

〈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(시·군·구(읍·면·동) 서류심사용)(안) 〉

| | | | | | |
|--------|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신청자 성명 | | 심사자 성명 | (서명) | 심사점수 (총점) | 점 |
|--------|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|

| 구분 | 평가기준 | 평가 내용 | | | 배 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|--|
| 대상 적격 여부 | 자격요건 충족여부 | ○ (소득기준) ① 수급자·차상위 가구원 중 만 15~만 39세인 자 ② 기준중위소득 50%~100% 이하 가구원 중 월소득 200만원 이하이면서 만 19~만 34세인 자 * 단, 차상위 초과 청년은 연간 소득 600만원(월평균 50만원)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 허용 ○ (근로상황) 현재 근로활동* 중인 자 *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(노인·장애인일자리사업 등)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(단, 자활근로소득은 인정) ○ (신용정보)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○ (제외업종) 사치성·향락업체, 도박·사행성 업종 종사자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격 |
| | | 50% 초과 ~ 100% 이하(C) 30점 | 40% 초과 ~ 50% 이하(B) 35점 | 40% 이하(A) 40점 | <input type="checkbox"/> A(40) <input type="checkbox"/> B(35) <input type="checkbox"/> C(30) |
| 심사 기준 | 기준중위소득 (40점) | | | | |
| | 가구특성 (20점) | 해당 없음 | ① 장애인/장애인부양 ② 법정 한부모 ③ 조손 ④ 다문화 ⑤ 북한이탈주민 ⑥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 ⑦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⑧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(20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(0) |
| | | 0점 | 20점 | | |
| | 저축지속 가능성 (30점) | ■ 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이 | | | |
|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(C) 20점 | | 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(B) 25점 | 12개월 이상(A) 30점 | <input type="checkbox"/> A(30) <input type="checkbox"/> B(25) <input type="checkbox"/> C(20) | |
| 대상연령 (10점) | 만 15세 이상 ~ 만 19세 이하(C) 3점 | 만 20세 이상 ~ 만 29세 이하(B) 5점 | 만 3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(A) 10점 | <input type="checkbox"/> A(10) <input type="checkbox"/> B(5) <input type="checkbox"/> C(3) | |
| | * 심사결과 총점 4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* 동점일 경우 ①기준중위소득, ②가구특성,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| | | | |
| 합계 | | | | | |

[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]

본 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계좌 I·II, 청년내일저축계좌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목적 | 구분 | 항목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| 필수 | 성명, 휴대전화, 주소, 이메일, 직업, 근무지명, 근무기간, 근무형태, 가족사항, 세대구성, 결혼여부, 소득 | <u>사업참여 종료 후 10년</u> |
| | 선택 | 국적, 집 전화번호, 비상연락(관계, 성명, 연락처) | |

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|
| (선택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|

■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목적 | 항목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| <u>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u> | <u>사업 종료 후 10년</u> |

※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동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■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목적 | 항목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, 사례관리, 연구 등 | <u>건강, 병력, 장애여부</u> | <u>사업참여 종료 후 10년</u> |

※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

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항목 | 보유기간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보건복지부, 한국자활복지개발원, 사회보장정보원, 하나은행, 지역자활센터 |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제공 | 인적정보 :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국적, 전화번호, 주소, 주거지 병력정보 : 병력, 가족력, 장애여부 그외 : 가족사항, 세대구성, 소득 | 서비스 종료 후 10년 |

※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제3자 제공 수집·이용 동의 예 아니요

■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 내역

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항목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계약에 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연구 수행기관 | 사업 개발 및 성과 | 인적정보 :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, 생년월일, 국적, 전화번호, 주소, 주거지 병력정보 : 병력, 가족력, 장애여부 그외 : 가족사항, 세대구성, 결혼여부, 소득, | 서비스 종료 후 10년 |

※ 위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연구 이용 동의 예 아니요

■ 기타 고지 사항 안내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합니다.

| 개인정보 처리 사유 | 항목 | 수집근거 | 보유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| 주민등록번호 |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 서비스 종료 후 5년 |

■ 법정대리인 동의 (만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)

| 법정대리인 성명 | 연락처 | 관계 |
|----------|-----|----|
| (인/서명) | | |

법정 대리인 동의 예 아니요

동의자 성명 : _____ 20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